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4주차 주간동향 (1.23.~1.29.)

[2023.2.1.(수), 제70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코로나	32,636	불법 주정차	44,592	생활불편
2	연말정산	31,274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283	생활불편
3	이태원	22,92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9,476	생활불편
4	금리인상	18,892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242	생활불편
5	UAE(300억 달러 투자)	15,771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293	생활불편
6	민주노총(압수수색)	8,258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1,971	생활불편
7	안보	6,871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1,970	생활불편
8	이란	6,214	덕은지구 입주자(버스신설 요구)	1,405	지역이슈
9	한일관계	5,73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1,159	지역이슈
10	강제징용	4,044	공개사과 요구(tvN 사기꾼 미화 방송)	954	방송통신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1.23.~1.2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1.12~1.18.)

민원 동향

○ **1월 4주차** 민원은 **179,032건**(일평균 25,576건)으로 지난주(220,592건) 대비 **18.6% 감소** ※ 안전신문고(52.0%), 국민신문고(31.0%), 새올 등(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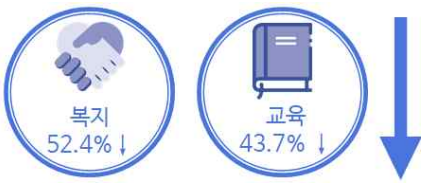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6.8%)**, 광주(25.1%), 제주(23.0%), 광주(22.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백봉지구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유치 요구** 및 학교 실내마스크 전면 자율화 요구 등 **복지** 및 **교육** 순으로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민원 (452건)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착용 권고 전환

- 변경된 방역지침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해당 여부 문의, 모든 지역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 요구

▪ **실내 마스크가 권고로 바뀐 후에도 일부 카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강제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경우 종사자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쉽게 말을 못하는데 권고 이후 **자체적으로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나요?** (1.28., 질병관리청)

▪ 정부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지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아이들이 계속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왜 지침을 내리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1.29., 질병관리청)

▪ **지하철 탑승 전까지 실내 마스크 권고인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역내에서 벗고 있다가 지하철 탈 때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플랫홈에 대기 중 벗다가 탈 때 써도 되는지 등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5., 질병관리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관련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3.1.20.(금)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1.20.(금) 11:00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342)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 (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주요 내용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단상)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주요 언론보도 】


동아일보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지하철-버스-병원선 써야

입력 2023.01.30. 오전 3:01 수정 2023.01.30. 오전 8:43

[실내 마스크 해제]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 오늘 결론

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학교·학원 등학차량 탑승	O
직장, 식당과 카페 내부	X 각 기업, 시설이 자율 결정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전 대기	X
철도, 기차,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 탑승	O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내부	O
병원 등 의료시설 내 1인 병실 내부	X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때는 의무 O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다인실 내부	X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때는 의무 O


세계일보

"혼자 벗기 민망" "수칙 달라 혼란"... 여전한 마스크 착용

입력 2023.01.31. 오전 6:06

실내 의무 해제 첫날

"다들 쓰고 있어 혼자 안 쓰자니 민망"
"기관마다 수칙 달라서 혼란" 하소연

"친구들 표정 볼 수 있어 좋아" 웃음
"마기꾼으로 놀림받을까 봐 안 벗어"
정기석 "5월쯤 마스크 완전 해제"

WHO,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결정

"실내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합니다."


NEWSIS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

입력 2023.01.30. 오전 10:19 수정 2023.01.30. 오전 10:2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과 착용한

〈동아일보(2023.1.30.)〉 〈세계일보(2023.1.31.)〉 〈NEWSIS(2023.1.30.)〉

□ 초등돌봄교실 증설 및 예산 확보 등 확대 요구 (376건)

○ ’23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 초등돌봄교실 축소 운영 불만 및 증설 요구, 대상 선정에 따른 불만 및 이의 신청 등



*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단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

■ **검토요청** 맞벌이로 어린이집까지는 제도가 잘되어져 있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방학은 2달이고 돌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서 선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맞벌이 가정의 꼭 필요한 아이들이 돌봄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1.,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관련 문의 (19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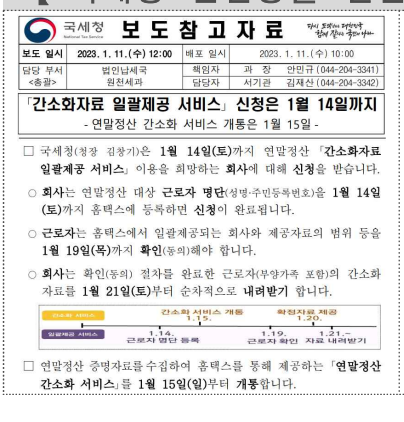
○ 국세청에서 근소소득자 대상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서비스 시작

- 연말정산 관련 대상 여부 문의 및 피부양자 공제 우선순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오류건 등 관련 민원

■ 연말정산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에 명예퇴직하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 근무지에 문의를 하니 23년 5월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요**? (1.26., 국세청)

■ 작년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하여 5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형제가 동시에 공제신청을 하면 직전년도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순위**라던데 문제는 동생이 1월에 연말정산을 받고 제가 5월에 공제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8., 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 (출처 : 국세청, KBS(1.15.)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3. 1. 11.(수) 12:00	배포 일시	2023. 1. 11.(수) 10:00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341)
		담당자	서기관 김재산 (044-204-334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목)**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토)**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 확정자료 제공 1.20.
일괄제공 서비스 1.14. 근로자 명단 등록 / 1.19. 근로자 확인 / 1.21.~ 자료 내려받기

□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3. 1. 4.(수) 12:00	배포 일시	2023. 1. 4.(수) 10:00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341)
		담당자	사무관 전정영 (044-204-3347)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 지급명세서 제출 3.10.
일괄제공 서비스 1.14. 근로자 명단 등록 / 1.19. 근로자 확인 / 1.21. 자료 내려받기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KBS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입력 2023.01.15. 오전 11:07 수정 2023.01.15. 오전 11: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됩니다.

〈KBS(2023.1.15.)〉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맞벌이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확대 요청	1AA-2302-0011801	서울특별시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